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한 외국(지역)운전면허증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들 나라(지역)의 운전면허증으로 일본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령으로 정한 자가 작성한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일본어 번역문을 작성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한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면허증 발급기관 또는 그 나라의 주일 대사관·영사관 등
- 2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 (J A F)
- 3 대만일본관계협회 (대만 면허에 한함)
- 4 독일자동차연맹 (독일 면허에 한함)
- 5 지플러스 주식회사 (ZIPLUS CO.,Ltd.) (대만 면허에 한함)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상륙한 날로부터 1년간)

기신일

상륙

외국 운전면허증
운전기능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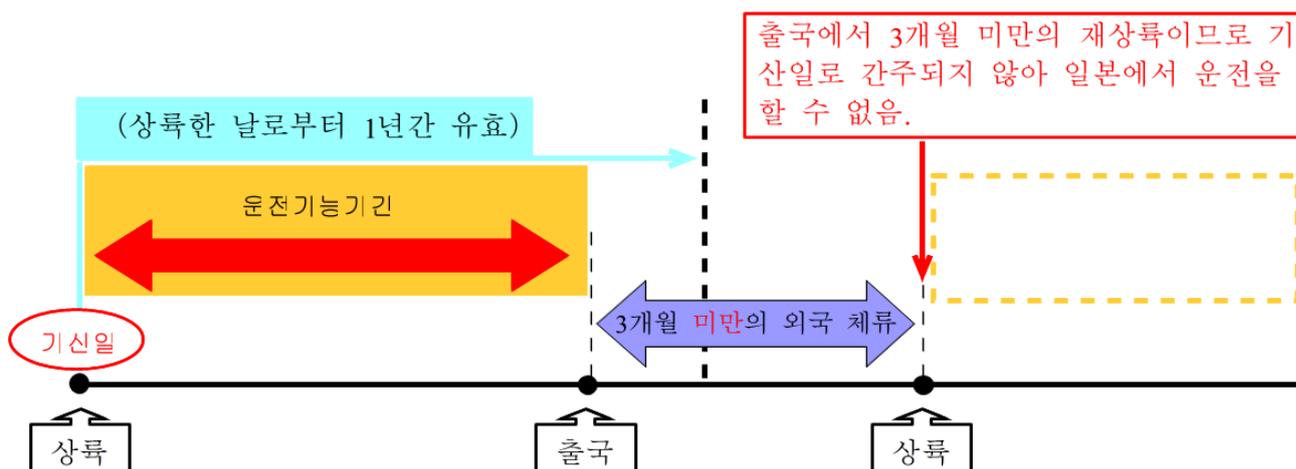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107 조의 2 에서 규정한 이른바 "3 개월 룰"에 저촉되지 않을 것

출국일로부터 3 개월 미만으로 재상륙한 경우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 (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출국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외국으로 나갔다가 3 개월 미만의 기간중 재상륙한 경우는 당해 상륙(귀국)일은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출국하신 분도 같습니다.



출국일로부터 3 개월이상 경과했다가 재상륙한 경우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출국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외국으로 나갔다가 3 개월이상 경과해서 재입국한 경우는 당해 상륙(귀국)일은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출국하신 분도 같습니다.

